

섹션 8 참가자 여러분,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로 인해 뉴욕시가 비상 사태를 겪고 있는 동안 섹션 8 참가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뉴욕시 주택국(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, NYCHA)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NYCHA는 비상사태 기간 내 최소 60일간 모든 만기 조치를 중단합니다.

**소득 감소를 겪은 세대의 경우, NYCHA의 셀프 서비스 포털(Self-Service Portal)의 이용을 권장합니다.** 섹션 8 참가자들은 NYCHA 셀프 서비스

포털(<https://selfserve.nycha.info>)을 통해 중간 재인증을 작성하여 세대 수익 감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섹션 8 참가자들은 NYCHA 고객 안내 센터(Customer Contact Center, CCC) 718-707-7771에 연락하여 바우처 소지자 중간 변경 요청서(Voucher Holder's Request Interim Change)를 우편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이 완전히 사라진 가정의 경우, NYCHA의 최소 임대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NYCHA가 자동으로 면제 조치를 적용합니다.

NYCHA는 뉴욕시, 뉴욕주, 연방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COVID-19와 이것이 주택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 이와 동시에 주민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COVID-19 진행 상황에 맞춰 주민 여러분에게 계속 새로운 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. 문의사항이나 우려사항이 있을 경우, 718-707-7771를 통해 CCC에 연락하십시오.

더 자세한 정보는 NYCHA 홈페이지([nyc.gov/nycha](http://nyc.gov/nycha)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.